

수업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 학칙 제6조(수업일수) 및 수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기당 수업일수) ①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2019.1.16.개정)

②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로 인하여 학기당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일 경우에도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교시별 수업시간) 교시별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 또는 75분 단위로 하며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19.1.16.개정)

시간	수업시간단위별 교시구분		주야구분
	1시간	1.5시간	
09:00~09:30	1교시	A교시	주간
09:30~10:00			
10:00~10:30	2교시	B교시	
10:30~11:00			
11:00~11:30	3교시	C교시	
11:30~12:00			
12:00~12:30	4교시	D교시	
12:30~13:00			
13:00~13:30	5교시	E교시	
13:30~14:00			
14:00~14:30	6교시	F교시	
14:30~15:00			
15:00~15:30	7교시	G교시	
15:30~16:00			
16:00~16:30	8교시	H교시	
16:30~17:00			
17:00~17:30	9교시	I교시	
17:30~18:00			
18:00~18:30	10교시	J교시	야간
18:30~19:00			
19:00~19:30	11교시	K교시	
19:30~20:00			
20:00~20:30	12교시	L교시	
20:30~21:00			
21:00~21:30	13교시	M교시	
21:30~22:00			
22:00~22:30	14교시	N교시	
22:30~23:00			

제4조 (수업운영)

① 모든 수업은 매 학기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서 해당 강좌

를 담당하는 교원이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강인원 변경, 기자재 사용 등으로 강의실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최소 7일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학처장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한다. (2017.10.20.개정), (2023.08.02.개정)

③ 교학처에서는 강의시간 및 강의실 임의변경, 무단결강에 대한 사항을 매학기 점검한 후 미 준수 교원에 대해서는 전임교원의 경우 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외래교원의 경우에는 다음 학기 위촉을 제한한다. (2017.10.20.신설),(2023.08.02.개정)

④ 선행학습 이수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LMS에 탑재한 강의콘텐츠를 수강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단, 강의 콘텐츠는 3년 안에 개발된 영상이어야 한다. (2020.12.28.개정)

제4조의2 (교외 수업운영)

①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교과목과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승인받은 학생 참여형 수업 (플립러닝, 블렌디드, 서비스러닝, 캡스톤디자인 등)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과목에 한해 수업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견학·답사를 진행할 수 있다. (2023.08.02.개정)

② 교외 수업은 최대 4주 범위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진행할 수 있다.

③ 수업계획서에 교외 수업의 실시내용에 대해 명시하여야 하며, 강의가 편성된 시간에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교외 수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 시작 전에 <별지서식 제1호>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외 수업운영 완료 후 결과보고서<별지서식 제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2019.07.23.개정)

제5조 (수업계획서)

① 교원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학사시스템을 통해 수업계획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수업계획서에는 교과목 개요, 학습목표, 교수·학습방법, 성적평가방법, 과제물, 교재/참고문헌, 주별 강의진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수업계획서 내용과 실제 수업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며, 수업계획서의 평가방법과 비율은 성적산출 비율과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④ 입력된 수업계획서는 학생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교과목 담당 교·강사가 개선보완 후 수강신청기간 전에 확정한다.(2018.2.2.신설)

제6조 (출석관리)

① 교·강사는 종합학사시스템을 통해 매 교시 담당과목의 수강학생에 대한 출결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교·강사는 해당 교과목 수강생의 출석·지각·결석(유고결석)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③ 결석이라 함은 수업시간에 15분 이상 지각하거나 강의도중 퇴실 또는 불참하는 것을 결석이라 한다.

④ 지각 2회는 결석 1회로 처리한다.

⑤ 교학처에서는 2주 이상 결석한 학생의 명단을 학과장 및 지도교수에게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0.2.25.개정),(2023.08.02.개정)

⑥수업일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 자격을 불허한다. (2023.08.02. 개정)

⑦ 교·강사는 학기 종료 후 전자출석부를 출력하여 서명 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3.08.02.개정)

⑧ 엄정한 출결관리를 위해 교학처에서는 출결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023.08.02.개정)

⑨ 교학처는 교·강사가 제출한 출석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19.10.24.),(2023.08.02.개정)

제7조 (휴강 및 보강) 휴강 및 보강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수업모니터링) ①엄정한 수업관리를 위해, 교학처는 수업기간 및 수업시간 준수 여부에 대해 수업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점검한다. (2023.08.02.개정)

②교학처는 수업모니터링 점검 결과를 교학처장에게 보고한다. (2023.08.02.개정)

제9조 (성적입력 및 성적제출) 교원은 담당과목의 학기말 시험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 성적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업관리위원회) ① 엄정한 수업관리를 위하여 수업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수업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2023.08.02.개정)

③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한다.

1. 수업모니터링 결과 점검
2. 학기말 수업운영결과 확인
3. 기타 수업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2017.10.20.신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교외수업 수업계획 승인신청서

교과목명(시수)		
개설학년		
담당교수명		
수강인원		
강의개요 및 목적		
수업계획		
일 자	수업내용	장 소

20 년 월 일

신청교수 :

(인)

- 붙임 : 1. 수업계획서 1부.
2. 학생 명단(사후 출석학생 사진 제출) 1부. 끝.

루터대학교 교학처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교외수업 결과보고서

교과목명(시수)							
개설학년							
담당교수명							
수강인원							
수업내용							
<table border="1"><thead><tr><th>일 자</th><th>수 업 내 용</th><th>장 소</th></tr></thead><tbody><tr><td></td><td></td><td></td></tr></tbody></table>		일 자	수 업 내 용	장 소			
일 자	수 업 내 용	장 소					

20 년 월 일

신청교수 :

(인)

붙임 : 출석사진 및 학생명단 1부. 끝.

루터대학교 교학처장 귀하

붙임) 출석사진 및 출석 현황

출석 사진			
번호	학번	성명	출석여부(출석0, 지각/, 결석X)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